

【 8 】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2. 4.

제출자 양주군수

1. 개정이유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 조의2)

나.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방법을 개선함(안 제20조제2항)

$$\textcircled{O} \text{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text{당해년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휴가일수”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textcircled{O} \text{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text{당해년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휴가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p> <p>〈신설〉</p>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u>〈삭제〉-----</u></p> <p>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p> <p>○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당해년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p>

현 행	개 정 안
<p>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자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p>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④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p>	<p>③(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현행 제4항과 같음)</p>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나.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방법을 개선함(안 제20조제2항)

$$\circ \text{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text{당해년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현행)

제3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1971. 1. 15]
[조례 제224호]

개정 1972. 8.18 조례 제 321 호

〃 1977. 2.12 조례 제 505 호

전문개정 1977. 5. 2 조례 제 547 호

개정 1978. 3.18 조례 제 583 호

〃 1979.10.18 조례 제 644 호

〃 1981. 6.23 조례 제 747 호

〃 1982. 4.17 조례 제 811 호

〃 1983. 5. 6 조례 제 903 호

〃 1985.10.25 조례 제 1074 호

〃 1988. 1.26 조례 제 1174 호

〃 1988.10.10 조례 제 1223 호

〃 1989. 4.18 조례 제 1261 호

〃 1989. 7.12 조례 제 1285 호

〃 1993. 4. 9 조례 제 1448 호

〃 1994. 6. 8 조례 제 1491 호

〃 1996. 2.12 조례 제 1559 호

〃 1997. 2.24 조례 제 1606 호

〃 1998. 3.16 조례 제 1663 호

〃 2000. 5.15 조례 제 1739 호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 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편 총무 제4강 서무 양주군자방공무원복무조례

제 4 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와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회복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 7 조(당직및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및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및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당직및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이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 9 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3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주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 6. 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개정 2000. 5. 15)

제 2 장 근 무 시 간 등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 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

제3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협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2(토요일전일근무제)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 3 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한다.

제18조(연기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기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체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기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제3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4. 6. 8)
③연가는 13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안에서 연가·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토요일전일근무제와 연가) ①토요일전일근무제 적용 공무원의 근무 토요일의 모든 휴가는 1일로 처리하고, 휴무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일연가는 반일로 처리한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의 토요일 연가는 반일연가로 처리한다. 다만, 연가이외의 병가·공가·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한다.

③30일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출산휴가등)는 토요일전일근무제의 근무·휴무에 관계없이 휴기간중의 모든 토요일은 휴가 1일로 처리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휴가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기증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

제3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친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친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친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친단서로 갈음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신설 '94. 6. 8)

5.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개정 2000. 5. 15)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15)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 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0. 5. 15)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상을 받을 때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때

3. 청백리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군수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군수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장기훈련중일 때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2에 의한 파견근무중일 때

3.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한 휴직중일 때

4. 기타 본인 또는 기관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⑧월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 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

제3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0. 5. 15)

⑩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지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5. 15)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 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94. 6. 8)

제 4 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 5 장 정치운동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원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

제3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친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00. 5. 15)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1. 1.15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8.18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2.12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5. 2 조례 제5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 5.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양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조례 제505호 1977. 2. 12)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978. 3.18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10.18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23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17 조례 제811호)

제3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5. 6 조례 제 903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25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6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10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18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12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9 조례 제1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6. 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12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24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16 조례 제1663호)

제3편 충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15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